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번 호	
--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5. 7.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 두는 부군수의 정원이 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
- 지방 12200 - 1079 ('95. 6. 28)호로 지방서기관(부군수) 1명 감축 승인되었음.
- 법무 11250 - 179 ('95. 6. 16)호로 도곡온천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화순온천개발사업소내에 도곡분소를 설치토록하여 부칙(한시정원) 조항을 변경코자 함.

2. 제정근거

-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(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)
- 법무 11250 - 179 ('95. 6. 16)호로 관련 조례안 조치 지시

3. 주요골자

- 군 본청란에 지방서기관 1명을 감한다.
- 부칙 ②항(한시정원)의 "도곡온천개발사업소" 를 "화순온천개발사업소도곡분소"로 변경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정원의 총수)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군 본청 : 227명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5. 7. 1 부터 적용한다.

② (한시정원)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 도곡분소 정원 6명은 '98. 12. 31까지
한시정원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</p> <p>1. 군 본청 : <u>228명</u>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</p> <p>1. 군 본청 : <u>227명</u></p>

검 토 보 고 서

□ 조례명

-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(안) 중개정조례(안)

□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 2조)

. 군본청 : 228명 → 227명 (1명 감, 부군수 : 지방서기관 → 서기관)

※ 총정원 : 696 명

. 군 본 청 : 227명

. 의회사무과 : 11명

. 직속 기관 : 114명

. 사업소 : 22명 (도곡분소 6명)

. 읍 면 : 322명

□ 개정사유

-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
'95. 7. 1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부군수 직급이 지방서기관 (4급)에서
국가서기관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군본청에 두는 지방직 정원 1명 감축
으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

□ 검토결과(의견)

- 본 조례 개정(안)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
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절차상
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